노회 구성을 위한 가이드

제66회 총회 결의에 따라, 제67회 총회에서 시행될 노회구역조정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절차로서, 노회 구성을 위한 안내를 공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
주요사항은, 노회명칭변경 및 구역설정(안), 표준노회규칙(안), 노회구성을 위한 안내입니다.

1. 노회창립 준비위원회 소집자

- 1) 노회창립준비위원회 구성을 위한 소집자는, 관련 노회가 협의하여 선정하되, 협의가 안 될 시 총회 임원회에 요청한다.
- 2) 소집자는 창립 노회에 소속된 각 노회장에게 연락하여 대표자를 파송하게 하고, 파송된 대표자를 중심으로 노회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한다.

2. 노회창립준비위원회의 업무

- 1) 창립총회 일정에 따른 주제, 일시와 장소를 검토하고 준비한다.
- 2) 총회가 제시한 노회규칙(안)에 기초하여 노회규칙 초안을 준비한다.
- 3) 노회 역사연계 및 회기는 해당 노회와 협의해서 결정한다.
- 4) 규칙에 준한 주요 시행사항을 마련한다(임원공천기준, 시찰부, 상비부, 특별부 조직 등).
- 5) 노회명부의 기명순서 기준은 장립 순으로 하는 것이 관례이다(명부는 교회정치 제134조를 참조하여 명부를 별도 작성한다).
- 6) 창립노회의 예배와 회순을 정하고, 노회 예산에 대한 초안을 준비한다.
- 7) 노회 회무처리를 위한 자료집을 준비하되, 미비 사항은 노회 석상에서 협의한다.
- 8) 창립노회에 따른 각 연합회 구성을 위하여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.

3. 정기노회 회집 (현재)

- 1) 일시 : 2017년 10월 16일(월) 저녁 7시
- 2) 장소 : 노회별
- 3) 회무처리
- 개회예배
- ② 각종 보고 건 처리
- ③ 노회결산잔액 처리 및 상회비 미수금 회수에 대한 건
- ④ 노회 문서 및 각종 자료 처리
 - * 모든 자료는 노회 회기를 이어가는 노회가 보관하되, 그렇지 않으면 총회로 이관한다.
- ⑤ 노회 재산(동산, 부동산)은 노회 자체적으로 방향을 설정하여 처리한다.
- ⑥ 해외교회와의 자매관계, 미자립교회와 선교기관후원에 관한 건을 협의한다.
- ② 16일(월)까지는 노회 폐지를 결의하여 선포하고, 모든 교회는 해당 노회로 이관된다.

4) 알림

- ① 상정 안건은 창립노회 개회 전에 준비위원회에 접수하되 긴급안건은 추후 협의한다.
- ② 창립노회 참석 시에, 목사회원과 교회별 장로총대 명단을 미리 준비하여 참석한다.
- ③ 모든 교역자는 총회 양식대로 신상카드를 작성하고, 명부를 작성해서 창립 노회 개회 시제출하게 한다.

- ④ 노회 계류 중인 사안과 치리에 관한 사항은 노회 서기가 해당 창립 노회에 이첩한다.
- ⑤ 노회원 중, 무임목사, 전도목사, 기관목사는 사역지와 관련된 노회에 소속하고, 은퇴목사는 본인이 사역했던 교회와 관련이 있는 노회에 소속됨을 원칙으로 한다. 민목과 군목은 총회 군경목선교위원회에서 배정하는 노회에 소속된다.

4. 창립노회 회집

- 1) 일시 : 2017년 10월17일(화) 오전 10:00 ~ 18일(수)
- 2) 장소 : 노회별
- 3) 예배와 회무처리
- ① 개회예배 (성찬식은 하지 않는다)
- ② 노회원 명부는 목사 회원, 교회별 장로총대를 접수받아 작성하되, 노회창립준비위원회가 결정한 노회원의 기명순서 기준에 따른다.
- ③ 창립노회준비위원장의 사회로 노회 규칙을 임시로 채택하고 개회하여 확정한다.
- ③ 임원을 개선한다.
- ④ 이하 회무처리는 회순에 따라 처리한다.

5. 창립노회 회집 후 처리사항

- 1) 노회가 파한 후에 촬요를 발송하되, 반드시 총회사무실에 접수되게 한다.
- 2) 노회 소속 교회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누락된 교회가 없도록 하되, 변경을 하려고 하면 노회 상호간에 협의할지라도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- 3) 접수한 교역자신상카드의 원본은 총회사무실로 발송하고, 사본은 노회에서 관리한다.
- 4) 각 연합회 조직을 조속히 구성하되. 지역별 연합회와 전국연합회 구성을 위하여 협력한다.
- 5) 총회의 총대는 1년간 전 노회 소속으로 사역한다.
- * 자세한 사항은 총회임원회 서기부와 총회행정실에 문의한다.

2017. 9. 1. 고신총회 총회임원회